

<제13호>

금융투자업자의 상호변경 및 임원 선임·해임 보고서

문서번호 : 2020-A07

2020. 03. 26.

수 신 : 금융감독원장

참 조 :

사본수신 :

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상호변경 및 임원 선임·해임 보고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상호의 변경보고,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실을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상호의 변경 보고
3. 임원의 선임·해임·사임보고

아리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¹⁾ 마 주 옥 (인)



본점소재지 ²⁾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23, 1층(삼성동, 중앙빌딩)
작 성 자 : 박 경 아 (과장)
전화번호 : 02-6959-1245

주1)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·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대표자를 기재함

2)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·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함

<붙임 3>

임원의 선임·해임·사임보고

※ 법 제418조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·해임(사임)시 작성한다.

가. 임원의 선임 현황


성 명	마주옥		
직 위	대표이사		
상임여부	상임	감사위원 여부	부
주민등록번호	720617- [REDACTED]		
학 력 ¹⁾	1998.02~2000.02 국민대학교 대학원(경제학) 1991.02~1998.02 국민대학교(경제학) 1988.02~1991.02 포항제철고등학교		
최근 5년간 경력 ²⁾³⁾	2020.03~현재 아리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(현) 2019.10~2020.03 티이원(주) 경영지원 이사 2016.06~2019.03 한화증권 투자전략 부장 2008.03~2016.05 키움증권 투자전략 부장		
선임일(최초선임일 ⁴⁾)	2020.03.18. (최초선임)	연임여부	
임기만료일	2023년 03월 18일		
비고			
<p>주 : 1)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2) 경력란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()내에 현직임을 표시<예 : 96.2~ △△(주) 대표이사(현)> 3) 겸직하고 있는 직위의 경우 겸직 표시<예 : 99.2~ △△(주) 대표이사(현, 겸직)> 4) 최초 선임의 경우 '최초선임'이라고 표기하고 연임의 경우에만 당해 직위의 최초 선임일을 기재</p> <p>■ 첨부서류 임원의 선임(대표이사 변경 포함)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</p>			

나. 임원의 해임(사임) 현황

성 명	변진영		
상임여부	상임	감사위원 여부	
주민등록번호	700413- [REDACTED]		
해임(사임)일자	2020년 03월 18일		
해임(사임)사유	본인의사		
비고			
<p>■ 첨부서류</p> <p>임원의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부</p>			

다. 임원 선임 심사표

성 명 ¹⁾	마주옥	직 위	마주옥	직전 근무처 및 직위	티이원(주) 이사
심 사 항 목			심 사 결 과		비 고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			해당사항 없음		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,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(이하 “금융관련법령”이라 한다)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(법 또는 영 제27조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		해당사항 없음		
5. 법,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(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)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6. 법,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7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(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	해당사항 없음		

심 사 항 목	심 사 결 과	비 고
<p>8.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,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,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가. 해임요구: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. 직무정지: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. 문책경고: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</p> <p>9.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,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,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가. 면직요구: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. 정직요구: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. 감봉요구: 감봉요구일부터 3년</p> <p>10. 법,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가. 직무정지 또는 정직: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. 문책경고 또는 감봉: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</p> <p>11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(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)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12.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</p>	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	
<p><u>총 합 의 견</u></p> <p>마주옥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-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</p>		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년 03월 26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마주옥 (인)</p> 		

라. 임원현황(변동후)

직위 (상임 및 등기여부)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앞6자리)	선임일 (최초선임일)	임기만료일	겸직사항	비 고
대표이사 (상임/등기)	마주옥	720617	2020.03.18	2023.03	해당사항 없음	
사내이사 (상임/등기)	변진영	700413	2020.03.18	2023.03	해당사항 없음	
사내이사 (상임/등기)	오경석	700315	2019.10.18	2022.10	해당사항 없음	
사내이사 (상임/등기)	조문철	680720	2020.02.03	2023.03	해당사항 없음	
사내이사 (비상임/등기)	오대호	780905	2019.10.18	2022.10		